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주의료원지부

# 2018년 산별 현장 교섭 합의서

공주의료원 노·사는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준수 할 것을 약속한다.

## ▣ 임 금 ▣

1.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노사는 2006년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합의사항을 존중하며, 지방의료원 중앙협약서 제 36조 제 1항<별표1>을 첨부한 <별표1>과 같이 변경한다.
2. 위 제 1조의 2018년 임금인상 적용시기는 2018년 11월 01일부터 적용하고, 지급시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3. 위 1조 및 2조에 의거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단체협약 ▣

### 1. 장시간 노동 근절

① 의료원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주 5일(주 최장 52시간) 초과 근무 시 발생하는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수당은 반드시 지급한다.

② 의료원은 노사합의 없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단, 사전에 노사합의 후 실시하는 교육으로 인하여 시간외 근무 발생 시 의료원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③ 의료원은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근거하여 1일 8시간 노동에 대한 휴게시간 60분 보장한다. 단 2017년 산별 현장교섭 합의사항(1시간 조기퇴근)을 모든 통상 근무자들에게 적용하여 휴게시간 보장한다.

④ 위 ①항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노사가 올해 (2018.12.31)안에 추후 논의한다.

### 2. 주 52시간 상한제 정착

① 의료원은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금지한다.

② 의료원은 위 ①항을 준수하기위한 방안으로 2017년 현장교섭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며 진료지원부서(영상의학과 병리과)에 각 1명씩 인력충원 한다.

단, 직제 정원표상 7급 정원 1명을 증원한다.

기 존							변 경						
직종별 \ 직급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직종별 \ 직급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방 사 선 사	10	1	1	3	4	1	방 사 선 사	11	1	1	3	5	1
입상 병리사	10	1	1	3	4	1	입상 병리사	11	1	1	3	5	1

③ 의료원은 위 ①항을 준수하기 위한 해당부서의 기존 근무체계를 인력충원 후 노사합의를 통하여 교대근무제도로 전환한다. 단, 신규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기간을 충분히 제공 후 시행한다.

④ 의료원은 탄력근무제도와 보상휴가제도 근절한다.

⑤ 위 ①항 ④항에 대해 추가로 확인된 해당부서에 대해 노사가 올해(2018.12.31)안에 세부사항을 추후 논의한다.

### 3. 간호인력 안정적 확보를 위한 이직 방지 대책

- ① 의료원은 간호사 charting업무전환 시 charting training 2주 이상 확보한다.
- ② 2019.01.01일자부터 시행하는 간호사 7급채용 관련하여 역차별 문제로 인하여 간호인력 이직을 막기 위해 현재 8급 1호봉부터 5호봉까지 호봉 저하 없이 승진하며 8급 6호봉 이상은 1호봉 감하여 7급 승진한다. 단 정기 호봉승급 후 승진을 적용한다.
- ③ 의료원은 예정에 없는 당일 퇴원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간호 업무 해소하기 위해 퇴원 예고제를 실시한다.

### 4. 복지포인트

- ①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노사는 2018년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합의사항을 존중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복지포인트를 신설·운영한다.
- ② 복지포인트는 개인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최초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하되 연도별 복지포인트는 아래 표와 같다.

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복지포인트 규모	350,000(원)	500,000(원)	650,000(원)	800,000(원)	900,000(원)

- ③ 세부운영 방안은 첨부한 『지방의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운영규정』에 준한다.

2018. 12. 31.

사 측 대 표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직무대행 진료부장



노 측 대 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별표 1>

### 지방의료원 2018년 기본급표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약사
1	3,148,900	2,698,800	2,411,800	1,989,600	1,785,500	1,591,900	1,448,800	1,316,200	1,785,400
2	3,265,500	2,809,100	2,509,300	2,082,100	1,866,900	1,669,200	1,504,400	1,367,500	1,901,500
3	3,385,400	2,921,100	2,610,400	2,177,700	1,953,200	1,750,800	1,575,900	1,435,000	2,025,200
4	3,506,300	3,035,700	2,715,600	2,275,300	2,043,800	1,834,000	1,652,100	1,506,600	2,156,900
5	3,629,100	3,151,900	2,823,500	2,375,700	2,137,600	1,920,500	1,732,300	1,583,900	2,286,400
6	3,753,100	3,269,200	2,933,600	2,479,000	2,233,700	2,009,200	1,813,200	1,656,700	2,423,700
7	3,878,600	3,387,600	3,045,400	2,582,500	2,330,600	2,098,200	1,893,700	1,728,900	2,569,100
8	4,004,400	3,506,600	3,158,600	2,686,400	2,427,900	2,183,600	1,971,400	1,799,000	2,710,500
9	4,131,300	3,625,900	3,272,100	2,790,600	2,520,500	2,265,200	2,045,700	1,865,600	2,859,600
10	4,258,100	3,745,100	3,386,500	2,888,300	2,609,000	2,342,200	2,117,200	1,930,500	3,016,900
11	4,385,000	3,865,400	3,493,200	2,981,000	2,692,400	2,417,000	2,185,400	1,992,800	3,167,900
12	4,516,700	3,978,500	3,596,300	3,072,200	2,774,300	2,490,000	2,253,200	2,055,600	3,326,400
13	4,639,100	4,084,500	3,694,100	3,158,100	2,852,100	2,560,200	2,318,200	2,116,900	3,476,100
14	4,752,600	4,183,300	3,785,400	3,239,200	2,926,500	2,627,100	2,381,300	2,176,300	3,632,600
15	4,857,200	4,276,300	3,871,500	3,317,100	2,997,500	2,691,500	2,441,600	2,233,400	3,777,800
16	4,954,900	4,364,000	3,952,600	3,390,000	3,064,800	2,753,600	2,500,000	2,287,800	3,928,900
17	5,045,600	4,445,500	4,028,800	3,459,700	3,129,300	2,811,600	2,557,000	2,340,200	4,066,700
18	5,129,900	4,521,600	4,100,800	3,525,600	3,191,000	2,868,000	2,610,100	2,391,300	4,209,200
19	5,207,900	4,592,700	4,168,700	3,588,000	3,249,000	2,922,000	2,662,300	2,441,700	4,335,500
20	5,280,900	4,659,100	4,232,200	3,646,800	3,304,400	2,973,500	2,712,200	2,488,500	4,465,500
21	5,348,500	4,721,200	4,292,000	3,703,400	3,357,200	3,022,700	2,759,100	2,533,600	4,571,800
22	5,411,100	4,779,400	4,348,200	3,756,600	3,407,100	3,070,000	2,804,200	2,576,900	4,691,700
23	5,468,900	4,834,100	4,401,300	3,806,500	3,455,200	3,114,900	2,847,100	2,618,400	4,809,100
24	5,522,800	4,885,500	4,450,800	3,854,100	3,501,100	3,158,300	2,888,400	2,657,200	4,929,400
25	5,567,200	4,932,700	4,497,700	3,899,400	3,544,400	3,199,400	2,927,800	2,695,400	5,044,700
26	5,609,500	4,972,600	4,541,800	3,942,000	3,585,900	3,239,400	2,963,300	2,730,800	
27	5,648,800	5,009,400	4,578,400	3,982,600	3,621,100	3,272,600	2,993,900	2,760,400	
28		5,044,600	4,613,600	4,016,600	3,653,800	3,304,700	3,023,500	2,789,500	
29			4,645,900	4,048,500	3,685,500	3,335,000	3,051,900	2,817,800	
30			4,677,300	4,080,000	3,715,700	3,364,400	3,079,600	2,844,800	
31				4,109,100	3,744,100	3,392,900	3,106,700	2,870,900	
32				4,136,600					

# 지방의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보건의료노조 산하 전국지방의료원 임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복리후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직원

제 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복지제도”라 함은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복지포인트”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활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개인에게 부여된 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3. “지급”이라 함은 배정한 복지포인트를 별도 기준에 따라 각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4조(복지포인트의 배정과 지급)

- ① 2019년 1월1일부터 복지포인트를 ~~신설~~ 운영한다.
- ② 복지포인트는 개인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 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포인트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 ④ 휴직(육아휴직 포함) 기간 동안에는 복지포인트 지급을 중단한다.
- ⑤ 휴직(육아휴직 포함), 사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포인트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 해당 복지 포인트를 환수한다.
- ⑥ 복지포인트를 매년 1월1일 부여하고,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소멸한다.
- ⑦ 복지포인트 정산은 사용자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후불제 또는 복지카드 등 결제방식으로 정산한다.
- ⑧ 복지포인트 사용 항목은 [별표 2]과 같다.

##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복지항목 분야		수혜범위	수혜대상	지급제한
자기개발	학원 수강	- 본인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어학 등 학원 수강 (사이버 강의 포함)	본인	- 자녀 사설학원비
	도서·어학기구입	- 본인의 능력 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전문도서, e-book		- 자녀 참고서·학습지·잡지류 등
	세미나 및 학술회의 참가비	- 본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세미나 및 학술회의 참가비		- 지방의료원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자율연수
건강관리	병·의원 진료비 등 건강관리 비용	- 건강검진을 포함한 각종 병원 및 약국 진료 - 한방진료(침술 등) - 안경, 콘택트 렌즈, 보청기 - 의료용품, 기가폰, 건강식품	본인 및 부양가족	- 미용 관련 의료행위 (성형, 치열교정 등) - 전기매트, 돌침대 등 구입
	건강관리 시설 이용	-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스키장, 골프연습장 등		- 골프장
	스포츠용품 구입	- 스포츠화(등산화 포함), 수영복, 헬스기구, 운동복 등		
여가활동	국내·외 여행비용	- 교통비(여행 당일 주유비 포함),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 여행지에서의 각종 입장료 및 이용료	본인 및 부양가족	대중교통비, 주유비 (여행지의 교통비나 주유비 제외)
	공연 및 스포츠 관람	- 영화, 연극, 뮤지컬 - 야구, 축구 등 각종 경기장 입장료		유가증권,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제외)
	레저시설 이용	-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CD·DVD 등 여가·레저용품 구입	- 교육, 음악, 영화 등 관련 CD·DVD - 전자제품, 광학제품, 캠핑용품, 악기류		
가정친화	취학전 자녀 보육비	- 취학전 자녀 보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유아용품 구입	부양가족중 미취학 자녀	- 사설학원비
	기념일 꽃배달	- 기념일 꽃배달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효도관광	- 국내·외 여행비용과 동일		
	노인복지시설 이용	- 요양원 및 실버타운 등 시설 이용		
	장례 서비스	- 장례식장 비용, 장례 서비스 업체 이용		